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7
----------	-------

발의연월일 : 2016. 3. 9.

발 의 자 : 나성린 · 강석호 · 강석훈
김광립 · 정문헌 · 박명재
이만우 · 김을동 · 이현재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2012년 말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시급한 상황임.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위축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법률 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 국내 관광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세관장은 기존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기간연장에 대한 적용례) 종전 제176조의2제5항에 따라 5년의 특허를 부여받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해서도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을 적용한다.

